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6의3] <개정 1999.7.15>

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(제50조제1항관련)

1. 성능개조여부검사

구 분	종 목	검 사 항 목	검 사 합 격 기 준
구조형식	전자충격기	1. 구조 형 식 의 원 형 유지상태	·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·손괴·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
		2. 전류유지상태검사	·허가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
		3.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	·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

2.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안전검사기준

구 분	종 목	검 사 항 목	검 사 및 합 격 기 준	검 사 요 령
구 조 형 식	전 자 충 격 기	1. 설계도면 일치 여부	·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·구조는 전원스위치·단속기·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	
		2. 재질검사	·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·균열이 안될 것	
		3. 발사장치여부	·발사하는 장치가 없을 것(치안목적용 제외)	
		4. 제조번호등표시	·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·제품명칭(영문약자 2자)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	
		5. 전자충격기의 전 체 길이	·전체길이는 60cm 이하일 것(치안목적용 제외)	

안 전 도 시 험	1. 실효전력 (OUTPUT POWER)	·10W 이내일 것	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 사한다.
	2. 절연상태	·AC 5,000V에서 0.5mA 이내일 것	절연상태 측정기를 사 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한다.
	3. 실효전류 (RMS : Root Mean Square)	·0.05A 이내일 것	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 사한다.
	4. 최대전압 (Maximum Voltage)	·60,000V 이내일 것	
	※ 실효전력, 실효전류 측정시 직류(DC) 저항 4000 내지 4500(Ω)을 걸어서 측정할 것		